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11. 9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0월 3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11. 9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중 인)

가. 제안이유

2005. 7. 1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,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3조)
-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(안 제15조)
- 근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(안 제16조)
- 특별휴가를 조정함 (안 제24조)
 -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, 포상휴가·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,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, 배우자의 출산, 배우자·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, 휴가일수를 축소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